

경영유의사항 공개안

1. 금융기관명 : 수협은행

2. 조치요구일 : 2026. 7. 21.

3. 조치내용

제재대상	제재내용
기관	○ 경영유의사항 2건

4. 조치대상사실

가. 경영유의사항

(1) 고객확인 의무 이행절차 정비

(가) 외화여신 취급시 고객확인 의무 이행절차 정비

은행 내규 「자금세탁방지 업무방법」 제15조 및 「자금세탁방지 업무 취급준칙」 제25조 제1항 등에 의하면 은행은 고객에 대한 고객확인 의무 수행시 그 이행이 어려운 경우* 고객과의 신규거래를 거절하거나 이미 거래관계가 수립되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거래를 종료하여야 한다.

* 고객이 신원확인 정보 확인 및 검증 등을 거절한 경우 등

그러나 은행은 외화여신 취급시에는 예외적으로 여신 심사 후 고객확인 절차가 진행되도록 업무처리를 하고 있어, 관련 법령의 취지와 부합하지 않는 측면이 있고 사후적인 고객확인 과정에서 거래 거절 사유가 발생할 경우에는 불필요한 여신 심사를 진행한 결과가 되는 등 업무의 비효율성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

<조치할 사항>

따라서 은행은 외화여신 취급시에도 여신 심사 전 고객확인 절차를 이행하도록 업무처리 과정을 정비하시기 바랍니다.

(나) 고객확인을 위한 체크리스트 정비

은행은 내규 「자금세탁방지 가이드」를 통해 고객확인을 위한 체크리스트를 마련하여 운영하고 있다.

하지만, 은행은 법인 고객에 대해서만 체크리스트를 운영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동 체크리스트의 경우에도 중요 확인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 않는 등 미흡한 측면이 있다.

* 실제소유자의 생년월일, 가상자산사업자 여부 및 가상자산사업자인 경우 신고 여부 등

<조치할 사항>

따라서 은행은 다양한 고객군(개인, 외국인 거주자·비거주자 등)에 대해 각각의 특성에 맞는 체크리스트를 마련하는 한편, 기존의 법인 고객 관련 체크리스트의 미흡한 점을 점검하고 보완하시기 바랍니다.

(2) 고객확인 의무 자료 보관 및 관리업무 강화

은행 내규 「자금세탁방지 업무방법」 제73조 등에 따르면 은행은 고객확인 및 검증 관련 자료 등을 고객과의 거래관계 종료일로부터 5년 이상 보관하여야 한다.

그러나, 2022.6.30.~2023.4.13. 기간 중 강화된 고객확인(비대면) 재이행 시 고객 (1,046명)이 입력한 내용 일부*를 저장하지 않은 사례가 발견되었고,

* 고객이 거래목적 '기타' 항목을 선택한 후 상세내용을 입력하는 경우 해당 내용 미저장

검사기간 중 은행은 강화된 고객확인 의무(EDD) 이행시 제출받은 실명확인증표 (주민등록증 등) 239,669건을 삭제·미보관하고 있다고 금융감독원에 최초 보고 하였다가, 이후 전산시스템에 별도 보관한 사실이 확인되어 정정 보고하는 등 고객확인 자료 관리에 있어 미흡한 부분이 발견되었다.

<조치할 사항>

따라서 은행은 고객확인 자료(대면·비대면 자료)에 대한 정기적인 보관 실태 점검 등의 관리 강화 방안을 마련하고, 특히 전산자료의 경우 전산시스템 점검 등을 통해 자료 보관 현황 및 시스템 설계의 적정성을 점검하시기 바랍니다.